

예비심사 안건

의안번호	제 2014-167 호
의 결 연월일	2014. 06. 06. (제 423 회)

의 결
사 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신 설 · 강 화 규 제 심 사 안

제 출 자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제출연월일	2014. 05. 30.

목 차

I.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II. 규제심사안	4
1. 중견기업 범위기준	4
2. 과태료 부과	16

I.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p>1. 중견기업 범 위기준</p> <p>* 신설</p> <p>* 법률 제2조제1항, 제6조부터 8조까지</p>		<p>* 법에서 위임한 중견기업 범위기준 규정(제2조제1항)</p> <p>-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산규모가 5 조원이상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이 주식(출자지분을 포함)의 100분의 30이상을 직·간접적 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등은 제외</p> <p>* 법 규정사항(제2조 제1호) :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p> <p>*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기 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p> <p>- 수·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 위는 최근 3개년 평균매출</p>

		<p>액이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안제6조)</p> <p>- 대기업인 이터닝사업자 참여제한에서 제외되는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 졸업후 3년간(안제 7조)</p> <p>-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안제8조)</p>
<p>2. 과태료 부과</p> <p>* 신설</p> <p>* 법률 제15조</p>		<p>*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별표 2)</p> <p>- (일반기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및 감경 기준 규정</p> <p>- (개별기준)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금액 규정(300~500만원)</p> <p>* 법 제31조(과태료) ①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p>

		것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 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 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	---

II. 규제심사안

1. 중견기업 범위기준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 법에서 위임한 중견기업 범위기준 규정(제2조제1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출자지분을 포함)의 100분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출자자인 기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
- * 법 규정사항(제2조 제1호) :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기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수·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안제6조)
 -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제한에서 제외되는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 졸업후 3년간(안제7조)
 -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안제8조)

<조문 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p>제2조(중견기업의 범위 등)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제외)
	<p>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 범위) 법 제13조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에 속하는 중견기업 중에서 최근 3개년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다.</p>

	<p>제7조(대기업인 이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 범위) 법 제14조에 따른 대기업인 이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에 속하는 중견기업 중에서 최근 3개년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p>
	<p>제8조(가업승계지원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 법 제15조에 따른 가업승계지원 특례대상에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에 속하는 중견기업 중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다.</p>

②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21120			
	규제사무명	중견기업 범위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진입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제안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중견기업정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강해수			
4. 근거법령명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6조부터 8조까지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대기업, 중견기업	4,000여개 기업	입법예고 (2.28~4.9)	○ 중견기업 범위기준 구체화(제2조제1항제2호), 수탁기업 특례대상(제6조) 범위 하향조정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
	이해관계자	대기업, 중견기업	4,000여개 기업	입법예고 (2.28~4.9)	○ 중견기업 범위기준 구체화(제2조제1항제2호), 수탁기업 특례대상(제6조) 범위 하향조정 의견에 대하여 검토 반영
관련부처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협의 (1.28~2.10)	없음	
6. 규제존속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10년 간 효력을 가짐에 따라 법 시행 후 10년간 존속 - 중견기업 범위는 동법령의 핵심사항으로 법 효력기간과 같이 존속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강화)규제내용 * 법에서 위임한 중견기업 범위기준 규정(제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출자지분을 포함)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출자자인 기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 * 법 규정사항(제2조 제1호) :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p>*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기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안제6조) - 대기업인 이력사업자 참여제한에서 제외되는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 졸업후 3년간(안제7조) -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안제8조) 										
8. 규제체계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중소기업 범위</td>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33%;">중견기업 범위</td>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24%;">중견기업 범위초과 (대기업)</td> </tr> <tr> <td>정책대상</td> <td></td> <td>정책대상 비대상</td> <td></td> <td>중견기업 제외</td> </tr> </table>	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범위	→	중견기업 범위초과 (대기업)	정책대상		정책대상 비대상		중견기업 제외
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범위	→	중견기업 범위초과 (대기업)							
정책대상		정책대상 비대상		중견기업 제외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중견기업은 우리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수출증대 등에 중요한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 군*이나,
 - * '12년말 기준 일자리의 8%, 수출의 12%이상을 담당
- 그 동안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를 부담하고 지원에서 배제되는 정책 등으로 인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하고, 추가 성장의 유인과 동력이 상실되는 문제초래
- 이에 따라, 지난해 9. 17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14. 1.21)하였으며,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을 추진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인해 발생된 기업의 성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
- 그 동안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를 부담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옴에 따라

- 그 대상인 “중견기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장촉진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중견기업 범위기준”은 기업·국민들이 쉽게 이해·인식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금번 시행령안은 법의 위임에 따라
 -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별되는 중간에 속하는 기업군을 의미하는 외형적·일반적인 중견기업 범위(제2조제1항)*와
 - * 외형적인 기준이 되는 중견기업으로 통계, 경제 위상 등의 기준됨
 - 시책별 정책대상이 되는 특례대상“중견기업 범위기준”(제6조에서 제8조까지)을 각각 규정*함
 - * 중소기업과는 달리 “중견기업 범위”자체가 정책대상은 아니며, 시책별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4항)
 - ▶ 중견기업법상 특례대상 중견기업 : 각각 매출 1,500억원 ~ 3000억원
 - ▶ 조특법의 R&D투자세액 공제대상 중견기업 : 매출 5천억원미만 기업
 - ▶ 관세법의 면세사업자 대상 중견기업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자산 1조원 미만,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의 자회사가 아닌 기업
 - ▶ 상속증여세법의 가업승계대상 중견기업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

□ 해외 사례

- 프랑스에서는 “중견기업 범위”을 법령으로 규정
 - (중견기업 범위)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종업원 수 250명~4,999명인 기업 중 연간매출액이 15억 유로 미만 또는 총자산이 20억 유로 미만인 기업

* 독일 히든챔피언 선정기준(H. Simon) : 매출액 50억 유로(약 7.2조원)이하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대안 1) 기존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범위기준을 그대로 유지

- (장점)

① (수요자) 외국계 대기업의 국내 자회사의 경우 중견기업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정책수혜 기회 가능성이 높아짐

② (공급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반발이 적어 사업수행이 용이

- (단점)

① (수요자) 외국계 대기업의 자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정책수혜 기회 약화를 초래하여 해당 기업의 불만 및 정책 불신초래 우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우려

② (공급자) 국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반해 외국계 대기업의 자회사는 정책대상에 포함하여야 함에 따른 정책부담 및 정책불신 초래 우려

○ (대안 2)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중견기업 범위기준”으로 확대

- (장점)

- ㉠ (수요자) 지원대상에 편입되는 중견기업이 확대되어 경영 안정 및 성장에 도움
- ㉡ (공급자) 제도시행에 따른 반발이 적어 사업수행이 용이

- (단점)

- ㉠ (수요자) 초기 중견기업, 성장단계에 있는 중견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등 상대적으로 혜택이 축소 및 기업 간 갈등조장 우려
 - ㉡ (공급자) 규모가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정책의 실효성 저하 및 재정부담 증가,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 및 저항우려
- (검토의견) “중견기업 범위기준”은 기존 산업발전법상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사이에 있는 중간에 속하는 기업군 전체를 거의 포함하고 있어, 대중적인 인식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의 측면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 안이라고 판단
-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도 성장단계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고,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기에 현실적이고, 합리적 안이라고 판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 “중견기업 범위기준”은 기존 “산업발전법”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한,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른 각종 규제부담 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비용발생은 없을 것으로 봄
 -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도 기존 규제대상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일부 완화하는 것이기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봄
 - 다만, 외국계 대기업의 국내 자회사가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중견기업 범위기준” 자체가 시책대상은 아니기에 대상 및 비용산정은 곤란
 - 기타 행정기관 또는 규제기관(유관기관)이 부담해야 할 조직신설에 따른 비용,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등은 없음
 - (편익) 계량적인 편익산정은 곤란하나, “중견기업 범위기준” 설정으로 “중견기업 파악이 용이하고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규제부담 감소, 지원강화 등으로 인한 성장촉진 및 고용·투자 활성화 등을 기대
 - 또한, 국내기업과 외국계 기업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형평성이 제고되어 국내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사회적인 편익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
 - 특례대상에 포함된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보호받거나, 공공시장 참여 기회확대 등의 실질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
- * 대기업과의 수·위탁거래 법적보호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수 및 거래금액은 1,115개사, 80.6조원으로 추정

(단위 : 개, 조원)

매출액구간	1천억원 미만	1~2천억원	2~3천억원	합계(a)	전체중견기업 대비	
					전체(b)	a/b
수탁기업수	651	284	180	1,115	3,859	28.8%
대기업 거래금액	19.4	31.1	30.1	80.6	629.7	12.7%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중소기업 관련 규제 여부
 - 제정안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중견기업의 범위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제여부”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음
- 규제비용
 - 중견기업 범위기준 설정에 따른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의견청취
 - 입법예고(2.28~4.9) : 전자관보 게시, 중기청 홈페이지 등록,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 * 중견기업 범위는 기존 “산업발전법령”(11. 6)의 규정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이며, 당시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집행 가능성 검토
 - 기본적으로 적용대상이 중소기업을 벗어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법 취지에 따라 중견기업 중에서도 지원대상은 기업규모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됨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중견기업 범위기준”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고,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적정하다고 판단
-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도 기존 대기업에 속해 받는 규제를 완화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

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2.28~4.9) : 전자관보 게시, 중기청 홈페이지 등록,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 * 중견기업 범위는 기존 “산업발전법령”(11. 6)의 규정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이며, 당시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언론보도) 보도자료 배포(14.2.26) 및 언론보도(13.2.27~28)
- (부처협의)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2회 실시
 - 1차(1.28 ~ 2.10), 2차(4.14 ~ 18)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규제집행 방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시행(14. 7.22)
- (집행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제정안 시행 전까지 언론, 중기청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파

2. 과태료 부과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별표 2)
 - (일반기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 규정
 - (개별기준)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금액규정(300~500만원)
- * 법 제31조(과태료) ①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 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문 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p>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p> <p>1. 일반기준</p> <p>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p> <p>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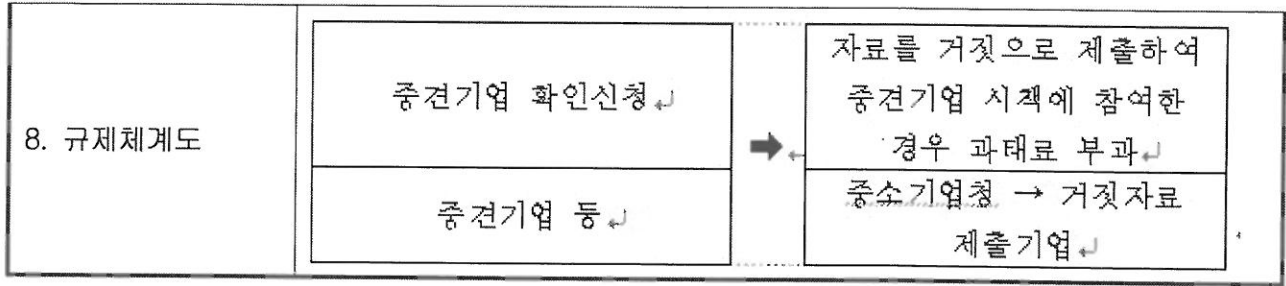
(단위: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300	400	500

②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21121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행정질서벌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제안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중견기업정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강해수			
4. 근거법령명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중견기업 시책참여자	700여기업	입법예고 (2.28~4.9)	없음
	이해관계자	중견기업	2,500여 업체	입법예고 (2.28~4.9)	없음
	관련부처	시책실시 기관		관계부처협 의 (1.28~2.1 0)	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 2017.12.31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강화)규제내용 *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별표 2) - (일반기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 규정 - (개별기준)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금액규정(300 ~ 500만원) * 법 제31조(과태료) ①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 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책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이 중견기업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중견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확인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이 필요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중견기업이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위상이 커지고, 이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국민세금이 중견기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
- 따라서, 중견기업이 아닌 자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

견기업 확인을 받아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를 행정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 확인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선량한 중견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외 사례 : 해당사항 없음

* 국내사례 :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과태료)

→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가 중견기업 확인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거짓으로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 중견기업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방지하고 규정을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최소한의 요건에 해당(규제대안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직접비용) 중소기업기본법에서도 중소기업 확인자료 거짓자료 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으며, 중견기업법에서도 과태료로 인한 직접비용은 연간 300만원 이하(1회 1건)로 추정
- (간접비용) 과태료 부과로 인한 생산성 하락, 경쟁의 감소 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산출은 곤란

- (직접편익) 직접편익은 없음
 - (간접편익) 거짓자료 제출을 통하여 허위로 중견기업 인정을 받으려는 사례를 방지하여 정부지원이 중견기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규정을 지키는 선량한 중견기업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과도한 규제비용 유발 여부) 중견기업 확인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이기에 중소기업에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집행가능 또는 필요한 규제방식 여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로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집행시기 등 차별적 집행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에게는 규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타법 사례를 참고했을 때 제재수준은 적당하다고 판단
 - *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과태료) 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

2) 이해관계자 협의

-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 9)를 실시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중견기업 확인절차 중 거짓 서류가 발견된 경우 집행하는 것이므로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